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20 발의연월일: 2025. 5. 28.

발 의 자:서삼석・이개호・김원이

이병진・문금주・조계원

채현일 • 박지원 • 김동아

박수현 · 위성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료관리법은 동물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동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산사료의 특수성 반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산사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의 경우 수산사료 검정의 전문성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등 축산동물용 사료와차별화된 수산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료관리법 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현실임.

이와 함께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사료 산업의 육성과 제조·판매·수입 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수 산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사료의 생산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산사료 실태조사의 시행, 수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하고 수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사료의 생산과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산사료를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산동물"이란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로서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산사료"란 수산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수산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수산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4. "배합사료"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5. "보조사료"란 수산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6. "수산사료산업"이란 수산사료를 연구개발·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7. "제조업"이란 수산사료(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 다.
- 8. "수입업"이란 수산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 9. "수산사료사업자"란 수산사료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0.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1.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2.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수산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조절·가 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수산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수산사료사업자는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사료를 연구

개발·제조·수입·유통·판매하도록 힘써야 하며, 수산사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사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사료를 수 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수산사료산업의 기반조성 등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산사료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 2. 수산사료산업의 현황과 전망
 - 3. 수산사료의 수급 계획
 - 4. 수산사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5. 수산사료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 6. 수산사료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 7. 수산사료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 9. 그 밖에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사료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단체의 장 및 수산사료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수산사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사료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 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또는 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산사료관련단체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안 정 및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사 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수산사료관련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제3장 수산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

- 제10조(제조업의 등록)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수산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

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 는 경우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 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 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경우
- 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제조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0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3조(수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안전성확보·수급안정 등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수 산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 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이나 제26조에 따른 수산사료검정기관에서 검 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수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한 수산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수산동물 등의 먹이, 그 밖의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한 수산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산사료의 공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품질보 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사료의 제 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수산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이하 "수산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수산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내용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수산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수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수산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수산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 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수산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성분등록한 수산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 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제17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
 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사료
 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수산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 3.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 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수산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수산동물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산동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 7. 인체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동물 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수산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수산동물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및 불법어획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② 누구든지 수산동물에게 제1항제7호의 수산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수산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산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수산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수산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 수산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수산사료와 그 제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수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수산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경우
 - 5. 제11조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수입한 경우
 - 7.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수산사료를 판매한 경우

-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10.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사료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수산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 11.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 12.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질 · 수산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 1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수산사료를 판매한 경우
- 14.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 15.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경우
- 16.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28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8.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0

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수산사료의 검사 등

- 제22조(자가품질검사)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수산사료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 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수산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1. 수산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 3.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 ③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수산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 항에 따른 수산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수 산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 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

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없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수산사료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사료의 약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산사료의 수 요자로부터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산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산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수산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또는 판매하는 수산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산사료검사원의 자격 · 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한다.
- 제26조(수산사료검정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수거한 수산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수산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수산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2. 수산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4. 열량ㆍ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5. 미생물·유해독소와 수산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 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 6. 유기산·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사료검정기관의 지정방법 및 수산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항에 따른 수산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 제27조(수산사료 재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수산사료검사 결과 해당 수산사료가 수산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산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6조에 따른 수산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 제28조(폐기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수산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7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수산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산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수산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수산사료를 회수·폐기, 그 밖에 해당수산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수산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29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산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 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수산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수산동물사육시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수산사료를 활용한 수산동물사육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사육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있다.
 - ② 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사육시험의 시험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31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원료 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수산사료 에 혼입되거나 해당 수산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 산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 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산사료를 제조하는 제조 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업자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자의 수산사료공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 산사료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 산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 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0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제15호·제17호 및 제 18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
- ⑧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 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수산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 사를 받아야 한다.
- ①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의 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사료의 수급

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수산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장부·서류·수산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제7호의 수산사료를 수산동물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수산사료검정기관·어가 등에 대하여 시설·기계 및장비의 개선·보완,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수 있다.
- 제33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
 - 3.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
 - 4. 제31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
 - 5. 제31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산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산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
- 제34조(증표의 제시) 제13조제2항·제25조제2항·제28조 또는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5조(청문)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사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6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산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

사하는 수산사료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수산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사료를 사용한 자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 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수입한 자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수산사료를 판매한 자
 -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 록을 한 자

- 6.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 8.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질 · 수산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 9.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판매한 자
- 10.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 11.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 12.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 13. 제28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4.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산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31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 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사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료관리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

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료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물·어류 등"을 "동물 등"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수산사료에 관하여 종전의 「사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사료관리법」을 갈음하여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